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2019. 4.



경찰대학
기획협력과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1 2020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분리선발 ○ 총인원 100명(남 88, 여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형 90명(남 80, 여 10) - 특별전형 10명(남 8, 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생 5명(남 4, 여 1) ▶ 한마음무궁화 5명(남 4, 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통합선발 ○ 총인원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별(일반·특별) 배정인원은 향후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
입학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 기혼자 입학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입학 가능 -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 연장 ○ 기혼자 입학 가능
체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종목(5종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악력 ② 팔굽혀펴기 ③ 윗몸일으키기 ④ 100m 달리기 ⑤ 1,000m 달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측정종목 중 2종목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악력 ② 팔굽혀펴기 ③ 윗몸일으키기 ④ 50m 달리기 ⑤ 20m 왕복 오래달리기 ○ 체력기준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녀 체력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 (p.5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②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녀 동일한 정자세(무릎 떴 자세)로 변경

※ 모집인원 관련 2023학년도부터 3학년 편입생 50명 선발 예정

2 2021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내용

1 입학 정원 : 총 50명

※ 전형별(일반·특별) 배정인원은 향후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

2 지원 자격

1. 일반·특별전형 공통

가. 학력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2021년 2월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검정고시 응시자는 2020년 9월 1일 이전 합격하였거나 합격 예정인 사람에 한함

나. 연령 : 197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출생한 사람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기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다. 국적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2.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다음의 “가” 유형 또는 “나” 유형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고교 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

가.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 및 부모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3년 이상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다음의 “가”, “나”, “다”, “라”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사람 또는 그의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사람 또는 그의 자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로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3. 결격 사유

가. 위에서 지원 자격으로 제시된 학력, 연령, 국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자도 지원은 가능하나 청람교육 입교일(2021년 2월 중) 전까지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법무부 장관 발행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제출 요함)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사람

라.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신체 조건과 체력 조건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사람

3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특별전형 응시원서 접수	2020년 5월경	○ 대행업체 웹사이트에서 원서 접수
일반전형 응시원서 접수	2020년 5월경	
1차 시험	2020년 7월경	○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세부일정 공지
2차 시험 (체력, 인·적성)	2020년 9월경	
2차 시험 (면접시험)	2020년 10월경	
최종 합격자 발표	2020년 12월경	○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발표
합격자 등록	2021년 1월경	○ 대행업체 웹사이트에서 등록

4 종합 평가기준

구분	내용				비고
1차 시험	과목	국어	영어	수학	○ 전형별 모집정원의 400% 합격 발표 ※ 결원 발생 시 1회에 한해 추가합격 발표 ○ 출제범위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로 함 ○ 1차 시험 결과는 최종사정에 반영
	출제 형태	객관식(5지 택일 형태) ※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문항 포함			
	배점	100점	100점	100점	
		200점 = 3과목 총점 × 2/3			
2차 시험	○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결과 신체 기준 미달 시 불합격 ○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은 각 단계별로 합격/불합격 결정 후 합격자 결과만 최종사정에 반영 ○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
최종사정 (1,000점)	○ 1차 시험 성적 : 20% (200점) ○ 체력시험 성적 : 5% (50점) ○ 면접시험 성적 : 10% (100점)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 15% (150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50% (500점)				○ 학생부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 영역별 가산점 없음 ○ 정시 복수 지원 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음

3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악력 (kg)	남	64 이상	63-61	60-58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 이하
	여	44 이상	43-42	41-40	39-38	37-36	35-34	33-31	30-28	27-25	24 이하
팔굽혀펴기 (회/분)	남	61 이상	60-56	55-51	50-46	45-40	39-34	33-28	27-22	21-16	15 이하
	여	31 이상	30-28	27-25	24-22	21-19	18-16	15-13	12-10	9-7	6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분)	남	58 이상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36	35-32	31 이하
	여	55 이상	54-51	50-47	46-43	42-39	38-35	34-31	30-27	26-23	22 이하
50m 달리기 (초)	남	7.00 이하	7.01- 7.21	7.22- 7.42	7.43- 7.63	7.64- 7.84	7.85- 8.05	8.06- 8.26	8.27- 8.47	8.48- 8.68	8.69 이상
	여	8.23 이하	8.24- 8.47	8.48- 8.71	8.72- 8.95	8.96- 9.19	9.20- 9.43	9.44- 9.67	9.68- 9.91	9.92- 10.15	10.16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남	77 이상	76-72	71-67	66-62	61-57	56-52	51-47	46-41	40-35	34 이하
	여	51 이상	50-47	46-44	43-41	40-38	37-35	34-32	31-28	27-24	23 이하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대학장이 정한다.
3. 50미터 달리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참고 사항

① 병역의무 이행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라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개별적으로 군 복무 이행

② 생활지도 개선 (2020년 시행)

1~3학년은 사복 착용 및 자율기숙(단,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합숙 및 제복 착용)을 하고, 4학년에 한해 제복 착용 및 의무합숙 실시

③ 학비 전액 지원 제도 변경 추진 중

등록금 일부를 학생 본인이 부담하되,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마련 중

※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적용되며 법 개정 시기는 미정